

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12~ 09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	2012. 02. 1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거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,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며,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
-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
-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

나. 재원조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- 회원의 회비, 국가·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지원금, 위탁사업 수수료 등

다.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-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
-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,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- 농어업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참여
-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-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등

라. 수익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-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

마.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- 군수는 거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

-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
- 바.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 - 회의소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제출
- 사.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 -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40,000천원(2012년도 당초예산 확보)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대상

나. 관련부서 협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다. 관련법규

-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3조
- 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11조
- 「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, 제7조
- 「민법」 제32조 등

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(2) 입법예고(2011. 12. 26. ~ 2012. 01. 15.)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(이하 “회의소”라 한다)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3조(재원구성)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
3.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
4. 기관·단체·후원인 등의 출연금품
5. 그 밖에 수익금 등

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어업 관련 군 시책(예산 사업 포함)에 관한 자문 및 건의
2.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농어업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및 제공·간행
5. 농어업에 관한 지도·상담·교육 참여
6.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·알선
7.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

8.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, 간담회, 전시회,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
9.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
10.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1.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
12.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위탁 및 운영지원)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규정)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제3조제2항(재원조성)

: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
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,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
제외 대상임

4. 작성자

농업기술센터소장 임 영 만